

부산지방법원 2021. 7. 16 선고 2020나49898 판결 [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]

---

### 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1. 7. 16 선고 2020나49898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0. 5. 21 선고 2019가단312988 판결

### 전문

**원고, 항소인A**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

담당변호사 김해민

**피고, 피항소인1. B**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림

담당변호사 김경환

8. I

9. J

10. K

11. L

피고 1 내지 6, 8, 내지 1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숙

**변론 종결** 2021. 6. 11.

**판결 선고** 2021. 7. 16.

**제1심판결** 부산지방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9가단312988 판결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에게, 피고 B, C, D, E, F, G, H, I은 각 경남 거창군 M 임야 16,308㎡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 한다)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, 18, 19, 20, 21, 22,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160㎡(텃밭), 같은 도면 표시 19, 23, 24, 25, 21, 20,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69㎡(공지), 같은 도면 표시 22, 21, 25, 24, 26, 27, 28, 29, 31, 30,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다)부분 182㎡(텃밭), 같은 도면 표시 22, 30, 31, 32,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라)부분 37㎡(대지), 같은 도면 표시 33, 34, 35, 36, 37,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마)부분 134㎡(공지), 같은 도면 표시 41, 40, 42, 43, 44, 15,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사)부분 20㎡(대지), 같은 도면 표시 80, 79, 78, 77, 76, 75, 74, 73, 44, 43, 42, 40, 39, 38, 36, 35, 8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아)부분 443㎡(구거)를 인도하고, 같은 도면 표시 37, 36, 38, 39, 40, 41,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(바)부분 80㎡'지상 석축을 철거하고, (바)부분 80㎡를 인도하고, 피고 J는 이 사건 임야 중 같은 도면 표시 15, 44, 45, 46, 47,

48, 49,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자)부분 41m<sup>2</sup>(대지), 같은 도면 표시 44, 43, 72, 71, 70, 69, 48, 47, 46, 45,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차)부분 163m<sup>2</sup>(구거), 같은 도면 표시 72, 81, 82, 71, 7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카)부분 54m<sup>2</sup>(텃밭)를 인도하고, 피고 F은 이 사건 임야 중 같은 도면 표시 71, 82, 83, 68, 69, 70, 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타)부분 69m<sup>2</sup>(텃밭), 같은 도면 표시 48, 69, 68, 67, 66, 65, 55, 54, 53, 52, 51, 50, 4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파)부분 159m<sup>2</sup>(구거), 같은 도면 표시 49, 48, 50, 51, 52,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하)부분 26m<sup>2</sup>(대지)를 인도하고, 피고 K, L는 각 이 사건 임야 중 같은 도면 표시 14, 55, 56, 57, 58, 59, 60, 61, 13,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')부분 22m<sup>2</sup>(대지), 같은 도면 표시 55, 65, 64, 63, 62, 61, 60, 59, 58, 57, 56,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나')부분 130m<sup>2</sup>(구거), 같은 도면 표시 66, 84, 85, 86, 64, 65, 6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다')부분 58m<sup>2</sup>(텃밭)를 인도하라(이하 이 사건 임야 중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해당 토지 부분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그 부호를 사용하여 '이 사건 ○부분 대지'와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)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,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판단

#### 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1) 이 사건 (아), (차), (파), (나')부분 각 구거에, R이 전원주택 단지의 분양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조경공사를 하였고, 피고들은 이를 이 사건 각 대지의 연장된 공간 내지 정원으로 활용하여 점유·사용하고 있다.

2) 이 사건 (라), (사), (자), (하), (가') 부분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8호 가목에 따라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·사무실·점포와 박물관·극장·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므로, 그 현황 그 자체로 피고들이 위 각 부분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.

3) 이 사건 (나), (마) 부분은 공지로 감정되었으나, 이 사건 (나) 부분 공지는 피고들이 이를 텃밭으로 활용하여 점유·사용하고 있고, 이 사건(마) 부분 공지는, R이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하여 평탄화한 후, 피고들이 이를 구거 및 텃밭을 다니는 통로로 활용하여 점유·사용하고 있다.

## 나. 판단

1) 이 사건 (아), (차), (파), (나') 부분 구거에 관하여 보면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(갑 제34 내지 36호증, 가지번호 포함)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, 이를 뒤집고 R이 조경공사를 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위 각 부분 구거를 점유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2) 이 사건(라), (사), (자), (하), (가') 부분 대지에 관하여 보면, 그 지목이 대지라고 하여 그 자체로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, 달리 피고들의 점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) 이 사건 (나), (마) 부분 공지에 관하여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부분 공지를 텃밭 내지 통로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.

**재판장판사권현영**

**판사조윤정**

**판사홍준서**

**별지**